

모 집 공 고 문

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,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비상임이사로 모십니다.

□ 공모직위 및 인원 : 비상임이사 5명

□ 임기 : 3년 (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가능)

□ 자격요건

-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
-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
-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비전을 제시할 능력을 갖추신 분
-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신 분
- 전문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비전을 갖추신 분
- 기타 비상임이사로서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
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4조 등 관련 법령 및 공단 내규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분

□ 제출서류

- 이력서(컬러사진 포함) 1부
- 자기소개서(A4용지 5매내외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A4용지 5매내외) 1부
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
- 지원서 관련 증빙서류(대학 이상 학력, 경력, 자격증, 포상, 논문 등) 사본 각 1부
※ 선임과정 중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□ 제출방법

- 제출기간 : '26.7.14.(화)~7.27.(월) 18시까지
- 제출방법 : 등기우편, 전자우편 중 택1
※ 접수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, 방문접수, FAX발송, 일반우편 접수 불가
- 제 출 처
 - 등기우편 : (우46726)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(명지동, 퍼스트월드 브라운)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(16층 기획조정처)
 - 전자우편 : recruit@g-airport.or.kr
- ※ 전자우편 제출 시 서명 후 PDF방식으로 스캔하여 제출하고, 반드시 유선으로 제출 완료여부 확인

□ 심사방법

- 서류심사 : 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 후보자 결정
- 심사기준 등 : 모집공고문 별첨자료 참조

□ 기 타

-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임을 취소할 수 있으며,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제반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응모자가 공단 내규상 일정 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(☎051-601-3741, 374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7월 14일

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

1 심사 기준

구 분	비 상 임 이 사
기본역량	☐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○ 기업회계.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능력 ○ 경영환경변화 예측 능력 ○ 대규모 조직의 인적.물적 자원 운영 경험 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○ 청렴성.도덕성.준법성 등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의무를 준수하고 이에 솔선수범 하는 태도 ○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 의지
고유역량	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능력 ○ 비상임이사로서의 정책결정 능력 ○ 경영환경 및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.능동적 대응 능력 ☐ 공공성과 기업성 조화 능력 ○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조정 능력 ○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 능력 ☐ 전문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비전 ○ 해당 전문분야 근무경력 ○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

② 관련 규정

○ 「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」 제16조 내지 제18조

제16조(심사기준) 위원회는 별표 1의 직무수행요건을 활용하여 심사기준을 결정한다. 다만, 위원회의 결의로 다르게 할 수 있다.

제17조(심사절차 및 방법) ① 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인원의 적정배수에 해당 하는 인원을 면접 심사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,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정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.

④ 서류 및 면접 심사시 지원자 1명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.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 하며,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로서 순위를 결정한다.

⑤ 위원회는 제16조의 심사기준 및 별표 2의 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심사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결의로 다르게 할 수 있다.

제18조(임원후보자 추천) ① 위원회는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, 직위 특성, 대상 직위 수, 법령에 따른 절차준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,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임원후보자를 선정·추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후보자는 정관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추천한다. 이 경우 임원후보자가 제출한 서류, 후보자 모집시 추천자의 추천서(추천방식 또는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시 추천방식에 의해 추천된 임원후보자에 한한다), 위원회 회의록, 별지 제 8호서식에 의한 임원후보자 추천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가 지원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원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임원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.

⑤ 정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.

1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- 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

제34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제22조제1항, 제31조제7항, 제35조제2항·제3항, 제36조제2항, 제48조제4항·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